#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97

발의연월일: 2020. 7. 22.

발 의 자:김도읍·권영세·윤한홍

추경호 • 박덕흠 • 김정재

정진석 • 조수진 • 구자근

김성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하여 더 욱 많은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.

현행법은 신고의무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·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·감독하는 자에게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불이익처분 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도 록 함(안 제8조).
- 나. 업무·고용관계로 근로자 보호·감독하는 자 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하 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중 "피해자"를 "피해자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피해자를 고용하고"를 "피해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자(이하 이 조에서 "피해자등"이라 한다)를 고용하고"로, "피해자를 해고하거나"를 "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"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업무·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·감독하는 자는 자기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」 제10조제1항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과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 <u>피해자</u> 에 대한 불이익처분	제8조( <u>피해자등</u> 에 대한 불이익처
의 금지) 누구든지 <u>피해자를</u>	분의 금지) <u>피해자 또</u>
<u>고용하고</u> 있는 자는 성폭력과	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자(이
관련하여 <u>피해자를</u> 해고하거나	<u>하 이 조에서 "피해자등"이라</u>
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	<u>한다)를 고용하고</u>
니 된다.	<u>피해자등을</u>
	해고하거나
제9조(신고의무) (생 략)	제9조(신고의무) ①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
	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・감독
	하는 자는 자기의 보호・감독
	<u>을 받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</u>
	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
	조제1항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
	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과
	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
	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